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지향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이효원,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2025년 7월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개정으로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·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제4조제8호에 추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른 스포츠데이 활성화
화를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8. (생 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른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개정으로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·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,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